

춘천지방법원 2021. 5. 12 선고 2020가단2246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상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1. 4. 21.

판 결 선 고 2021. 5. 12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,

가.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ㄺ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‘가’ 부분
비닐하우스 145.86㎡ 및 같은 도면 표시 (ㄱ), (ㄴ), (ㄷ), (ㄹ), (ㄺ)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‘나’
부분 샌드위치판넬 건조물 16.53㎡에 있는 유체동산을 수거하고,
나. 위 ‘가’ 부분 비닐하우스와 ‘나’ 부분 건조물을 인도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(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정정하였다)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윤이나

별지